

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

구분	내용
1. 계획 검토시 유의사항	<p>가. 보호구역 내부의 사업은 문화유산과의 관계성, 필요성, 적정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.</p> <p>나. 보호구역 외부의 사업은 관람객의 관람편의와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유지·관리 차원에서 위치·규모·형태 등을 검토한다.</p> <p>다. 향후 계획 내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 그 단위 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 추진절차 또는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이행되는 점을 감안 거시적 관점과 기본계획 수준에서 검토한다.</p>
2. 계획 수립자 유의사항	<p>가. 계획수립 관련 법,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</p> <p>나.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,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·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다. 문화유산 세부 유형별·종류별 문화유산의 수리·복원·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다.</p> <p>라. 사업비는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자체사업(소유자, 관리자 등), 지방자치단체사업, 정부지원사업(관계부처 등) 등 개별사업별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토록 한다.</p> <p>마.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·판단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
3. 계획 수립 기준	<p>가. 문화유산의 유형별·시대별·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유산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.</p> <p>나. 역사적 사실과 연구 및 고증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수·정비 계획을 수립한다.</p> <p>다.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타당성·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.</p> <p>라.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, 사유지 매입, 발굴조사 및 고증, 정비 및 활용, 사업 추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.</p> <p>마.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환경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.</p> <p>바. 문화유산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고,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.</p> <p>사.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5년 단위의 단기·중기·장기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하고 사업의 성격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한다.</p>

구분	내용
4. 계획에 포함할 내용	<p>가. 문화유산 일반현황 조사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유산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○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○ 문화유산 관련 그 간의 학술 조사 및 연구, 발표 등의 현황 및 내용 ○ 문화유산 구역 보존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○ 문화유산 유지·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○ 문화유산 및 주변지역 토지 소유현황 ○ 문화유산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 등 <p>나.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조사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해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관리 이력 정리 ○ 당해문화유산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검토·분석 ○ 당해문화유산 보수·정비계획 ○ 문화유산 주변 주요건축물 보수정비 이력 및 내용 ○ 문화유산 주변 시설물의 노후·훼손 현황 ○ 문화유산 관련 유물·유적 및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에 관한사항 ○ 조경 및 수목 정비에 관한사항 ○ 주변 지형 및 배수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<p>다. 관람·편의시설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람객 이용현황 및 패턴 분석 ○ 관람객 진입도로 현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○ 관람안내 및 관람객 이용 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<p>라. 의견수렴 및 반영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현황 ○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 현황 등 <p>마. 문화유산 소방·방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화기, 소화전 등 소화시설 설치·운영현황 ○ CCTV, 화재 감지기·경보기 등 방재시설 설치·운영현황 ○ 재해·재난 대응 소방도로 및 접근로 개설현황 ○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운영현황 <p>사. 문화유산 활용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</p>
5. 보고서 작성 유의	<p>가.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,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.</p> <p>나. 조사보고서는 지정된 집필방법 및 편집기준에 따라 수집된 각종 문헌자료, 실측 및 현황 조사자료, 수리실적,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서식, 도면,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·분석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기존 서술체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.</p> <p>다. 보고서의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, 생산연도, 저자, 출판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인물사진 등 관련사진을 게재할 경우 그 출처 또는 제공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 또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고증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수록하여야 한다.</p> <p>라.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</p>

	<p>기록 및 도면,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.</p> <p>마. 보고서에 수록하는 사진은 모두 200dpi이상으로 하며, 크기는 수록 크기에 맞춘다.</p> <p>바. 보고서 인쇄 시 흑백사진으로 인쇄되는 경우는 반드시 RAW파일에서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여 수록한다. 편집은 칼라사진으로 하고 인쇄 시 흑백으로 인쇄하는 일은 피한다.</p> <p>사. 보고서에는 별도의 간행물발간등록번호, 한국표준도서번호(ISBN)를 부여받아 명기하여야 한다.</p> <p>아. 보고서에 수록되는 도면은 지면에 맞게 편집하고 지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. 또한 수록도면은 추후 이용자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산이 가능한 최대 스케일(지면의 크기에 맞추어)로 수록하여야 한다. 축척과 함께 바(BAR) 스케일도 함께 표기한다.</p> <p>자. 보고서 내용(도면포함)을 PDF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PDF작성 품질을 인쇄품질 수준으로 설정한다.</p> <p>차. 모든 도면은 캐드(CAD)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.</p> <p>카. 사진촬영은 건축물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경, 근경, 입면, 상세, 내부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촬영·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 한다.</p>
6. 보고서 등 제출	<p>가. 국가유산청 검토·승인 요청 시 제출 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정비계획 보고서(안) 파일 및 출력물 7부 ○ 종합정비계획 브리핑 파일 및 출력물 7부 <p>나. 최종 완료된 후 제출 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정비계획 완료보고서 9부 제출(기관별 우편발송/국가유산청 자료실 3부, 건축유산팀 3부,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부)